



# 양 천 구 보 건 소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한의원 민원사항 관련 협조 요청

1.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최근 관내 한의원을 대상으로 다음의 민원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내용과 규정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, 향후 유사한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및 협조부탁드립니다.

### □ 민원 사항

- 관내 한의원에서 조제연월일이 미표기된 탕, 환 등을 보관 및 판매

### □ 조치요청 사항

- 한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
  -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, 용법 및 용량, 조제연월일 등 기재
-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하는 경우(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)
  - 처방 주체가 한의원이며 원외탕전실에서는 처방에 따른 단순 조제행위를 수행함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의료법 상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표시하도록 원외탕전실에 조제 의뢰

### □ 관련 규정

#### 의료법 제18조(처방전 작성과 교부)

- ⑤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「약사법」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, 용법 및 용량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. 다만,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(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)

-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약제의 내용·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
  2. 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
  3. 조제 연월일
  4. 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·소재지

끝.

## 양천구보건소장



수신자 양천구 한의사협회, 관내 한의원

지방보건주사 보 손현정      의약팀장 이현선      의약과장 김요한      전결 2025. 1. 7.

협조자

시행 의약과-477      (2025. 1. 7.)      접수

우 08095    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, (신정동)      / <http://www.yangcheon.go.kr>

전화번호 02-2620-3920      팩스번호 02-6948-5571      / [hjson01@yangcheon.go.kr](mailto:hjson01@yangcheon.go.kr)      / 비공개(5,6)

나로부터 시작되는 청렴한 양천